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0 발의연월일: 2024. 6. 24.

발 의 자:한병도·조 국·위성락

위성곤 • 진선미 • 박정현

김한규 · 정태호 · 정준호

김영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. 이러한 헌법적 가치 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「교육기본법」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 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.

민주시민교육은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선거·정치교육뿐 아니라 타 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, 공동의 문제해결에 함께하는 공동체의식, 민 주시민으로서의 소통능력, 허위·조작정보 판별능력 등을 기르기 위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.

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, 주민자치의 강화와 내실있는 자치분권을 달성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

보이며,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분석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임.

현재 사회 각 영역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, 다수의 지방자치단체(2020년 10월 기준 46개)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이에 관한 법적 근 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.

이와 관련하여 「평생교육법」상 평생교육에 '시민참여교육'이 포함되어 있으나, '시민참여교육'이 평생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인 0.1%에 불과하며, 사회 각 영역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 진흥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「통일교육 지원법」(1999년),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(2005년), 「법교육지원법」(2008년), 「경제교육지원법」(2009년), 「인성교육진흥법」(2015년) 등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고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 국민의 자 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,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.
- 나.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민주시 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다.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민주 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,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 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(안 제7조 및 제21조).
- 라.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,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 및 제10조).
- 마.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민주시민 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- 바.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(안 제13조).
- 사.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시 ·도에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고 시·군·구에는 설치 또는 지정

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
- 아.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.
- 자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.
- 차.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).

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,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민주시민교육"이란 모든 국민이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.
 - 2. "민주시민교육기관"이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및 시설로서 제 15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.
- 제3조(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)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 기반하여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.
 - ②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.

- ③ 민주시민교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여야 하며,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④ 민주시민교육은 사회 각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생 동안 장려되어야 한다.
- ⑤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조직 및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.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 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등

제6조(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 교육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- 2.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
- 3.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재 및 매체활용에 관한 사항
- 4. 민주시민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제14조에 따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·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6.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 계획
- 7.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민·관협력체계 및 협업연결망 구축·강화에 관한 사항
- 8. 민주시민교육의 시행・평가・활용・홍보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7조(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)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특별시장·광역 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기본계

획을 기초로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연도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8조(민주시민교육위원회) 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 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- 1.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민주시민교육정책에 관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민주시민교육 지원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
 - 4.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협력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 - 5. 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(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 차관
 - 2. 국회에서 추천하는 10명(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

교섭단체가 추천하는 5명,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5명)

- 3.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지역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시행계획의 수립 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실시와 관 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·도지 사 소속으로 시·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 다)를 두어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민주시 민교육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시·도위원회 및 시·군·구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12조(공공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3장 민주시민교육원 등

- 제13조(민주시민교육원) ① 국가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(이하 "교육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 - ② 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.
 - ③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④ 교육원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.
 - ⑤ 교육원에는 원장(이하 "민주시민교육원장"이라 한다) 1명을 두며, 민주시민교육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 다.
 - 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
 - 2.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
 - 3.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 - 4. 민주시민교육기관 및 사업에 대한 지원
 - 5.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
 - 6.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운영현황에 관한 조사

- 7. 제14조에 따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지원
- 8.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· 운영
- 9.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제협력 지원
- 10.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⑦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4. 사업에 관한 사항
- 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사항
- 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- 7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⑧ 제7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⑨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①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4조(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) ① 시·도지사는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

- ·도·특별자치도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·운영 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에 지역민주시민교육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해당 지역의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
- 2. 해당 지역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지원
- 3. 해당 지역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
- 4. 해당 지역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· 운영
- 5. 교육 운영 등 그 밖에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 요건, 지원내용과 그 밖에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민주시민교육기관 등록) ①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할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,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지정취소 등)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

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- 3.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제3조에 규정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5.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- ② 시·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민주시민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
- 2.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- 3.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제3조에 규정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5.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·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

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7조(민주시민교육기관 경비지원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 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8조(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 협력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민주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협력 및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지방자치단체 협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거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, 연수 및 재교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21조(민주시민교육 지원 관련 보고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한 때에는 그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칙

- 제22조(청문)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정과 민주시민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한다.
- 제23조(지원된 경비의 반환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, 민주시민교육기관이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비의 반환과 관련된 절차는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- 제24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위원회·교육원·지역민주 시민교육위원회·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및 민주시민교육기관이 아 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제2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 임하거나 교육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제26조(과태료)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이 법에 따라 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
- 제3조(교육원의 설립준비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
 - ② 설립위원은 교육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교육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한다.
 -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